

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313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4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외국인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관련 조항 삭제(안 제7조 및 제8조)
- 지원단체 및 업무 위·수탁 대상 범위 확대(안 제2조, 제20조)
- 안산시 외국인주민협의회 설치·운영근거 마련(안 제8장, 제37조~제41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8. 3. 13. ~ 4. 2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3
- 방침결정문 : 붙임4

< 붙임 1 >

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” 를 “그 자녀 ” 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” 을 “ 지원 사업을 하는 ” 로 한다.

제7조 앞에 “제2장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” 를 삭제한다.

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제3호 중 “ 관계법령 ” 을 “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” 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외국인 주민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” 을 “외국인 주민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” 으로 하고, “3년 이내로 하되” 를 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되” 로 한다.

제24조제3호 중 “ 관계법령 ” 을 “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” 로 한다.

제6장의 제목 “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” 를 “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” 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” 를 “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” 로 한다.

제29조제3호 중 “ 관계법령 ” 을 “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” 로 한다.

제36조 다음에 “제8장 외국인주민 협의회” 를 삽입한다.

제8장에 제37조, 제37조의2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(협의회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공동체의 활성화 및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통한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“안산시 외국인주민 협의회” 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
- ④ 협의회 위원은 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-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 중 사임 등으로 위원의 궐위가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37조의2(협의회의 존속기한) 대표자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.

제38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- 1. 외국인주민 관련 각종 시책 의견수렴
- 2. 다문화 축제 및 행사 자문
- 3. 다문화관련 정책 홍보 및 외국인주민 의견 전달
-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9조(회의)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.

- 1. 정기회 : 분기별 개최
- 2. 임시회 :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40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
2. 사망, 국외이주,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
3.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4. 협의회 회의, 활동 등 장기간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

제41조(수당 및 여비)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3조제1항 중 “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가”를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등이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다문화정책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다문화정책과장 임 병 권
	계장·팀장 직위·성명	다문화정책팀장 장 동 진
	담당자 성명·전화	함 순 영 (행정 3733)

현행	개정안
<p>제20조(설치 및 기능) ① (생략) ② 시장은 상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<u>외국인 주민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</u>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·수탁 계약에 따른다.</p>	<p>제20조(설치 및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외국인 주민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</u> <u>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되,</u></p>
<p>제24조(위탁의 해지) 1.·2.(생략) 3. 그 밖에 <u>관계법령</u>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</p>	<p>제24조(위탁의 해지) 1.·2.(현행과 같음) 3. <u>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</u></p>
<p>제6장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</p>	<p>제6장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</p>
<p>제26조(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이주배경 청소년지원 정책 시행을 위하여 <u>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(이하 “청소년센터”라 한다)</u>를 설치할 수 있다. ②·③ (생략)</p>	<p>제26조(설치 및 운영) ① <u>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9조(위탁의 해지) (생략) 1.·2.(생략) 3. 그 밖에 <u>관계법령</u>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</p>	<p>제29조(위탁의 해지) (현행과 같음) 1.·2.(현행과 같음) 3. <u>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</u></p>
<p><신설></p>	<p>제8장 안산시 외국인주민 협의회</p>
<p><신설></p>	<p>제37조(협의회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<u>외국인주민 공동체의 활성화 및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통한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“안산시 외국인주민 협의회” 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</u>를 둔다. ② <u>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 ③ <u>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</u> ④ <u>협의회 위원은 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u> ⑤ <u>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중 사임 등으로 위원의 궤위가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37조의2(협의회의 존속기한) 대표자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.
<신설>	제38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1. 외국인주민 관련 각종 시책 의견수렴 2. 다문화 축제 및 행사 자문 3. 시책 및 다문화관련 정책 홍보 및 외국인주민 의견 전달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신설>	제39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. 1. 정기회 : 분기별 개최 2. 임시회 :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④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<신설>	제40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 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 2. 사망,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.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. 협의회의 회의, 활동 등 장기간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
<신설>	제41조(수당 및 여비)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현 행	개 정 안
<p>제43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43조(업무의 위탁) ①....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등이....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